

본 자료는 '04. 3. 30 조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	지역혁신팀
		담당자	원동진 과장 이학동 사무관
		전화	02-2110-5593

<PC통신 : 천리안 go opengo, 천리안 go epic, 인터넷 : <http://www.mocie.go.kr>>

20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(RIS)시범사업 지원 실시 - 47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의 지역혁신사업에 중점 지원-

□ 산업자원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200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「지역혁신특성화(RIS) 시범사업」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.

○ 이 시범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관된 전략산업 및 지연(地緣)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산·학·연 협력요소(기술개발, 인력양성, 마케팅, 기업지원서비스, 네트워킹, 창업공간 마련 등 인프라 확충 등)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

-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470억원씩 향후 6년간 총 2,82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.

○ 지역혁신 관계전문가 간담회 등 지난 6개월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이 사업은 지역 스스로 발굴·선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, 중앙은 지원과 조정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의 발전모델 기반을 조성하며,

- 지역내 산·학·연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케 하고,

-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, 인력양성, 네트워킹 등 핵심요소를 복수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(주관기관)는 기업지원기관, 대학, 연구소,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컨소시엄(포럼형 사업은 예외)을 구성하여 광역시·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
- 대상사업은 지역혁신협의체의 심의와 광역자자체간 복합사업일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간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, 사업 유형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(혁신기반형 : 광역시·도별 25억원이내, 혁신특별형 : 2개과제, 15~25억원, 포럼형 : 광역시·도별 2억원 이내)을 3년간 지원받게 됨. 다만 포럼형 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연계된 기초지자체 사업에 지원되며, 그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함.

□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

-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원은 수도권 등 16개 광역시·도를 대상으로 차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혁신특별형 사업의 경우는 경쟁·평가방식을 도입하되 광역지자체가 연계된 초광역사업도 가능토록 하며,
- 프로젝트(혁신기반·혁신특별) 사업은 다양한 산·학·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S/W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각각의 사업유형별 목적, 사업규모, 참여요건 등은 다음과 같음.

《사업 유형 종합》

유 형		신청자격		광역별 제출건수	배정한도		요 건
		주 체	권역		사업수	예산액	
시 범 프로젝트	혁신기반	주관기관 (권소사업)	광역 단 위 (기초 단위 포함)	배정예산의 2배수 내	1~2개/ 광역	25억원이내/ 광역	· 지자체 · 참여기관 대응투자 필수 · 3개이상 참여기관 필수
	혁신특별	주관기관 (권소사업)	광역 단 위 / 초광역 단 위	광역 또는 초광역별 1개 과제	2개/전국	15~25억원/ 사업	· 지자체 · 참여기관 대응투자 필수 · 3개이상 참여기관 필수
포럼활동지원		주관기관	기초 단 위	배정예산의 1.5배수 내	3~5개/ 광역	2억원이내/ 광역	· 사업당 3천~5천만원 이내

- ☐ 산업자원부는 이 사업의 시행계획을 2004년 4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며, 동 계획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도 지자체별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을 확정 · 추진할 계획임.

【붙임】 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

**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(RIS)
시범사업 기본계획**

2004. 3.

산 업 자 원 부

< 목 차 >

I. 개요	1
II. 시범사업의 자원 방안	4
III. 향후 추진계획	10

I. 개요

1. 지역혁신체계(RIS)의 개념

-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·기업·연구소·지자체·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

2. 시범사업의 취지

□ 지역혁신체계(RIS) 개념의 구체화

- 일부 지식인층에 국한된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이해를 사업을 통해 지자체, 지방의회, 언론 및 산학연 관련자들에게 확대

□ 네트워킹(Networking)과 공동학습(Collective learning)에 기반한 기획(Planning)에서 실행까지의 RIS 구축과정을 사업화

○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지역혁신의 출발점

- 당해 지역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한 철저한 인식 필요
-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지역의 미래상 점검

○ 참여자간 역할 분담과 혁신기반 조성

- 지역의 혁신 주체(대학, 연구소, 기업, 지자체 등)가 중심이 되어 RIS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
- 지역실정에 맞는 비전수립과 사업기획을 통한 혁신방향 설정

○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

- 5개년계획에 제시된 전략산업 등의 육성사업, 전국에 산재한 공단의 클러스터화 사업 등을 기획하고 실행

3. 시범사업의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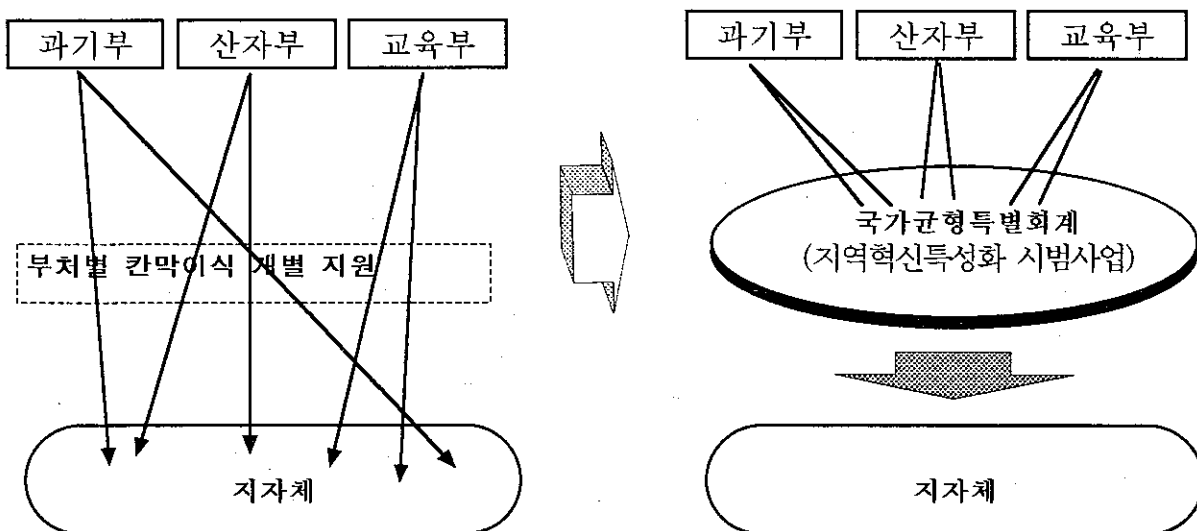
□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

- 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분야 사업 개발, 세부 실행계획 수립, 컨설팅을 위한 포럼 운영
- 기존 각부처 사업으로 구축된 H/W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개발, 네트워킹, 휴먼웨어 개발 등을 연계하는 사업

□ 시범사업의 주요내용

- 기술혁신인프라 구축, 기술개발, 인력양성, 혁신주체간 네트워킹, 혁신 공간 마련을 위한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
- 여러개의 사업이 복수로 연계된 사업의 경우 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는 시범적 사업
- 기존의 기술개발, 인력양성, H/W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(교육부, 과기부 등 사업과도 연계)

<Package 사업 체계도>



4. 그 동안의 추진 경과

○ 국가균형발전 「3대 원칙」과 「7대 과제」중 하나로 선정('03.6.12, 대구구상)

<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 >

- 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,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통한 지방화
- ②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경제 혁신
- ③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'계획적 관리'를 통한 상생발전

< 7대 과제 >

3대 특별법 제정, 정부소속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지방 이전, R&D 예산의 지방지원비율 확대, 지역혁신체제 시범사업 추진,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, 지역특화 발전특구법 제정,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대책 추진

○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추진('03.7.13)

- 「산업형 지역혁신체제 시범사업(안)」을 마련하여 산자부-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

○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견 수립('03.8.8)

- 「지역혁신(RIS)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」과 관련하여 대학교수, 지자체 등과 협의 실시

○ 기획예산처 협의('03.9) 및 국회를 심의를 통해 '04년도 시범사업 예산 확정('03.12)

○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「'04년도 지역혁신 특성화(RIS) 시범사업 지원 계획」(안)을 협의하여 확정('04.3)

II. 시범사업의 지원 방안

1. 세부사업 유형

(1) 지역혁신(RIS) 「시범 프로젝트」 사업

□ 사업목적

- 지역별 특성에 맞는 RIS 구축을 위해 필요한 S/W 중심의 사업 지원

□ 사업내용

- 5개년계획에 제시된 전략·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·연계 프로젝트
 - 산·학·연 협력 요소 : 기술개발(R&D), 인력양성, 기업 지원서비스, 네트워킹 등 여러 중앙부처 사업의 연계
- 기존 각부처 사업으로 구축된 H/W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개발, 네트워킹, 휴먼웨어 개발 등을 연계하는 사업
 - S/W 중심으로 지원하되 필요 최소한 H/W 구축비용(건물 리모델링비, 최소한의 입지 구입비 등은 총사업비의 10~ 30%이내) 인정
- 광역지자체가 농산어촌형 RIS 구축의 시급성을 검토하여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시 우선 고려
- 1~3차 산업간의 교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제(예:「제조업+서비스업」, 「농수산업+제조업」)은 동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

□ 사업유형

- 「혁신기반사업」(지자체당 1개사업) : 광역지자체당 20억원 내외
 -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등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여 지원 요청
- 「혁신특별사업」(지자체 경쟁) : 경쟁·평가 방식
 - 과제당 15~25억원 이내에서 과제 선발(초광역 사업도 가능)

(2) 「시범 프로젝트」 사업의 성공모델로의 발전을 위한 지역별 「포럼활동 지원」사업

□ 사업 목적

- 「시범 프로젝트」 사업을 포함하여 RIS 관련 사업을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 운영 지원

□ 사업내용

- 지역혁신발전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혁신 포럼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
 -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
 - 지역의 이슈 중심으로 혁신체계 발전의 장기 비전 수립
- 국내외 산·학·연 전문가 초청비, 강연·원고료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내생적 혁신 기초를 다지는데 활용
- 농산어촌과 같이 낙후지역에서 운영하는 포럼의 경우 우선적 지원

□ 사업 유형 : 「기초지자체 포럼 사업」

- 「시범 프로젝트」 등의 내용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혁신 포럼 경비를 지원
 - 프로젝트형 사업에 연계된 기초자치 단체가 없는 경우 지역산업 진흥사업 등 기존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의 연구를 위한 포럼운영 지원
-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포럼 과제를 선발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운용
 - 기초지자체 포럼사업당 3~5천만원 정도 지원하여 광역지자체별로 3~5개 포럼을 구성·운영(광역지자체별 약 2억원 한도)
 - 기초지자체 포럼 운영시 광역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

※ 광역지자체는 기존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('04년:16억원)으로 별도 추진

- 지역혁신협의회, 지역혁신연구회, 기업지원기관 Hub 등 광역지자체 단위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

2. 재원 배분계획

(1)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

○사업 기간 : 사업당 3년간(다만, 포럼형 사업은 1년 이내)

○'04년 예산 : 470억원

(2) 권역별 재원 배분

□ 사업별 예산 지원 방안

○「시범 프로젝트」사업

- 「혁신기반사업」(지자체 공통) : 16개 광역지자체별 최대 25억원 한도내에서 10% 범위 차등(지자체별 2배수로 과제를 신청)
- 「혁신특별사업」(지자체간 경쟁) : 광역권역 및 초광역 사업을 대상으로 2개 과제를 경쟁평가하여 선정(광역 또는 초광역별로 1개 과제를 신청)

○「포럼활동 지원」사업

- 지자체별로 제시한 사업을 심사 평가하여 기본적으로 정액 지원

3. 전담기관

□ 주요 기능

- 전담기관은 지자체 사업기획 자문, 사업의 추진 지원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·운영
- 사업의 운영 절차관리, 심사평가 관리, 회계관리 등을 담당
 - 사업의 협약체결·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

□ 한국산업기술평가원(ITEP)을 전담기관으로 선정

- 기획 평가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은 분야별 전문기관(KIET, 문화관광정책연구원,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등)에 위탁 또는 활용

4. 지역별 주관기관

□ 지역별 사업주관기관 주도로 사업 컨소시엄 구성

-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지역혁신 지원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주관하여 다수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(포럼형 사업은 예외)
- 지역별 사업 주관기관은 광역지자체가 지역단위협의체(지역혁신협의회도 가능)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
- 대상사업은 중앙의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확정하되, 평가지침은 산자부·위원회 협의후 확정

□ 주관기관의 기능

-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수행하고 참여기관은 소관 단위사업 추진

5. 사업 참여 비율

□ 참여주체의 매칭
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경우 소관 세부 과제(직접 수행 부분) 지원 정부 지원예산의 5~10% 대응투자를 의무화

□ 광역지자체의 매칭

- 사업별 정부지원예산의 10~20%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운영

6. 사업추진 및 관리

□ 협약 체결 및 예산집행

- 산자부 ↔ 총괄관리기관(전담기관) ↔ 주관기관간 3자 협약 체결 및 예산집행
- 기타 세부사항은 지역특성화사업운영요령(이하 “운영요령”이라 함)에 규정

□ 사업비 계상·지출, 사업결과 보고·평가 및 사후관리

- 운영요령 등에 제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

III. 향후 추진계획

